

제 1830호
2009. 8. 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정 동 일
편집인: 관 광 공 보 과 장 박 순 중
전화: 2260-218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 제2009-523호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
 - 제2009-524호 :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공람공고(정정) 3
 - 제2009-529호 :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지정 및 특정구역 지정·표시완화 고시등에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12
 - 제2009-530호 : 서울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공고 15
- 인사발령
 - 일반직 공무원 복직(2009년8월1일자) 1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2260-2182 / FAX.(02)2260-1556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09-523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0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열 랐

- 기 간 : 2009년 8월 5일 ~ 8월 25일(21일)
- 장 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2009.6.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9년 8월 5일 ~ 8월 25일(21일)
- 제출사항 :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 2009.1.1 ~ 5.31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한함
- 제 출 처 : 세무1과 과표팀(☎ : 2260 ~ 4602 - 4)
- 제출방법 :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09-524호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공람공고(정정)

1.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 열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중구청 주택과(☎ 2260-1854)
신당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2231-9559)
- 공람내용

1. 정비구역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23,680	34,647(증)	58,327	

2. 정비계획

-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4,647	34,647(감)	-	-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23,680	34,647(증)	58,327	100	
총 계		58,327	-	58,327	100	

2)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58,327	23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서울시고시제2008-392호)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용도지역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3,680	증)34,647	58,327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합 계	4,038	증)7,856	11,894	20.72	
	소 계	880	증)4,332	5,212	7.43	
	소 공 원	880	감)880	-	-	
	어린이공원	-	증)3,739	3,739	6.41	
	소 공 원(1)	-	증)356	356	0.61	
	소 공 원(2)	-	증)237	237	0.41	
	도 로	2,848	증)2,797	5,959	10.22	
	학교시설	310	증)159	469	0.80	
	공공청사 (동사무소)	-	증)1,323	1,323	2.27	
택 지 (획 지)	소 계	19,642	증)26,791	46,433	79.28	
	택 지 (1-1)	14,377	증)2,702	17,079	29.28	
	택 지 (1-2)	5,265	증)14,799	20,064	34.40	
	택 지 (1-3)	-	증)9,101	9,101	15.60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	8	국지 도로	95	신당4동 333-293	신당4동 333-185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	8	국지 도로	69	신당4동 333-244	신당4동 333-350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7	6	국지 도로	11	신당4동 333-253	신당4동 333-253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8	6	국지 도로	11	신당4동 333-285	신당4동 333-257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9	6	국지 도로	47	신당4동 333-19	신당4동 333-4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12	15~22	보조 간선	1,588	신당동 광장	금호 동고개	일반도로	-	총고 722호 (36.12.26)	-
변경	중로	2	12	15~22	보조 간선	1,588	신당동 광장	금호 동고개	일반도로	-	총고 722호 (36.12.26)	일부구간확폭 20m → 22m (294-30~294-85)
기정	소로	-	26	6	집산 도로	458	신당4동 313-8	신당4동 333-446	일반도로	-	건고 768호 (64.1.24)	-
변경	중로	2	-	15	집산 도로	208	신당4동 313-8	신당4동 330-405	일반도로	-	건고 768호 (64.1.24)	일부구간확폭 12m → 15m (313-8~330-405)
	중로	3	-	12	국지 도로	116	신당4동 330-407	신당4동 333-187	일반도로	-	건고 768호 (64.1.24)	일부구간확폭 6~8m → 12m (330-407~333-187)
	소로	2	1	8	국지 도로	90	신당4동 333-187	신당4동 333-817	일반도로	-	건고 768호 (64.1.24)	일부구간확폭 6~8m → 8m (333-187~333-817)
	소로	3	26	6	국지 도로	74	신당4동 333-513	신당4동 842-6	일반도로	-	건고 768호 (64.1.24)	길이변경
기정	소로	2	7	8~10	국지 도로	760	신당4동 314-56	신당4동 349-107	일반도로	-	건고 768호 (64.1.24)	-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49	신당4동 314-56	신당4동 333-710	일반도로	-	건고 768호 (64.1.24)	일부구간확폭 8~10m → 12m (314-56~333-710)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511	신당4동 333-710	신당4동 333-107	일반도로	-	건고 768호 (64.1.24)	길이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61	신당4동 333-261	신당4동 333-396	일반도로	-	중고4호 (99.2.4)	-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66	신당4동 333-187	신당4동 333-814	일반도로	-	중고4호 (99.2.4)	일부구간 연장 (333-187~333-598) 일부구간 확폭 (6m → 8m) (333-598~333-814)
폐지	소로	1	-	10	국지 도로	190	신당4동 330-15	신당4동 330-2	일반도로	-	서고157호 (07.05.25)	-
폐지	소로	2	-	10	국지 도로	95	신당4동 321-32	신당4동 326-10	일반도로	-	서고105호 (83.2.24)	-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84	신당4동 330-38	신당4동 330-78	일반도로	-	건고 768호 (64.1.24)	-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47	신당4동 333-182	신당4동 333-791	일반도로	-	중고4호 (99.2.4)	-

(나)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3	도로신설(8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2-4	도로신설(8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3-7	도로신설(6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3-8	도로신설(6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3-9	도로신설(6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로신설
중로2-12	중로2-12	일부구간(20m → 22m)확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로확폭
소로-26	중로2-	12m → 15m 확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로확폭
	중로3-	일부구간(6m → 12m)확폭	
	소로2-1	일부구간(6m → 8m)확폭	
	소로3-26	도로분류(중로3 → 소로3)변경 길이(458m → 74m) 변경	
소로2-7	중로3-2	일부구간(8~10m → 12m)확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로확폭
	소로2-7	길이(760m → 511m) 변경	
소로3-3	소로2-2	일부구간 선형변경 일부구간(6m → 8m) 확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선형변경 및 확폭
소로1-	-	도로폐지(10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내 도로폐지
소로2-	-	도로폐지(8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내 도로폐지
소로3-1	-	도로폐지(6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내 도로폐지
소로3-2	-	도로폐지(6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내 도로폐지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중구 신당4동 333-260번지	1,974	감)1,974	-	서중고46호 (00.09.07)	

(나) 주차장 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주차장 폐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차장 폐지

(3)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소공원	중구 신당4동 330-22번지 일대	880	감)880	-	서고 제2007-157호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중구 신당4동 333-191번지 일대	-	증)3,739	3,739	-	
	공원	소공원(1)	중구 신당4동 330-342번지 일대	-	증)356	356	-	
	공원	소공원(2)	중구 신당4동 330-258번지 일대	-	증)237	237	-	

(나) 공원 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공원	폐 지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위치변경
어린이공원	위치 변경 (330-22번지 일대→333-191번지 일대)	기존공원과의 연계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곳 선정
소공원(1)	신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 주민 휴게공간 확보
소공원(2)	신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 주민 휴게공간 확보

(4)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동사무소	중구 신당4동 333-179번지 일대	-	증)1,323	1,323	-	
변경	청구초교	초등학교	중구 신당4동 330-2번지	21,025	-	21,025	서고557호 (78.10.25)	

(나) 공공청사, 학교 변경 사유서

학 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	신 설	주민자치센터의 확충으로 주민 복지 증대
청구초교	정비구역내 일부 학교부지 교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 대지정형화를 위한 일부 학교부지와의 교환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공동이용시설	경 로 당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주민공동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어린이놀이터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보 육 시 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문 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의함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신당 제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기 정	23,680	택지(1)	14,377	신당4동 321번지일대	기 정	210	-	-	210	-
				택지(1-1)	17,079 증)2,702							
				택지(2)	5,265	신당4동 313-70번지 일대						
				택지(1-2)	20,064 증)14,799							
	변경	58,327 증) 34,647	-	-	신당4동 333-185번지 일대	변경	411 증) 201	-	-	411 증) 201	-	
			택지(1-3)	9,101 증)9,101								
공공청사 (동사무소)			- 1,323 증)1,323	신당4동 333-179번지 일대								

2)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m ²)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m ²)	명칭	면적 (m ²)																																							
변경	신당 제8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정 23,680	기정	택지(1) 14,377	신당4동 321번지 일대	53,400 이하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아파트)	60% 이하	238% 이하	90m이하 평균18층 이하																																	
			변경	택지 (1-1) 17,079 (중)2,702		65,000 이하																																					
			기정	택지(2) 5,265	신당4동 313-70 번지일대	18,600 이하																																					
			변경	택지 (1-2) 20,064 (중) 14,799		75,000 이하																																					
	변경	58,327 (중) 34,647	기정	-	신당4동 333-185 번지일대	-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아파트)																																				
			변경	택지 (1-3) 9,101 (중)9,101		29,000 이하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	신당4동 333-179 번지일대	-				동사무소																																
			변경	1,323 (중)1,323	5,00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15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임대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이상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전용면적(m²)</th> <th>세 대 수</th> <th>비 율(%)</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임 대</td> <td>34.96</td> <td>77</td> <td>7.77</td> <td rowspan="7">전용85㎡이하: 84.96% 전용85㎡초과: 15.04%</td> </tr> <tr> <td>46.91</td> <td>69</td> <td>6.96</td> </tr> <tr> <td>51.99</td> <td>24</td> <td>2.42</td> </tr> <tr> <td rowspan="4">조합 및 분양</td> <td>59.97</td> <td>162</td> <td>16.35</td> </tr> <tr> <td>84.97</td> <td>510</td> <td>51.46</td> </tr> <tr> <td>108.12</td> <td>3</td> <td>0.31</td> </tr> <tr> <td>121.99</td> <td>144</td> <td>14.53</td> </tr> <tr> <td>계</td> <td>78,419.17</td> <td>991</td> <td>10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전용면적(m ²)	세 대 수	비 율(%)	비 고	임 대	34.96	77	7.77	전용85㎡이하: 84.96% 전용85㎡초과: 15.04%	46.91	69	6.96	51.99	24	2.42	조합 및 분양	59.97	162	16.35	84.97	510	51.46	108.12	3	0.31	121.99	144	14.53	계	78,419.17	991	100.00
	구 분	전용면적(m ²)	세 대 수	비 율(%)	비 고																																						
	임 대	34.96	77	7.77	전용85㎡이하: 84.96% 전용85㎡초과: 15.04%																																						
		46.91	69	6.96																																							
		51.99	24	2.42																																							
	조합 및 분양	59.97	162	16.35																																							
		84.97	510	51.46																																							
		108.12	3	0.31																																							
		121.99	144	14.53																																							
	계	78,419.17	991	100.00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 1항 4호 가목)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평균층수를 13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다산로(28m) : 3m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 예정 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전면 재개발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감)188	이상없음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세대수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13-70번지 일대	택지 1-2에 포함	2	14,469.54㎡	170	34.96㎡	77세대	전체세대 수의 17.15%
					46.91㎡	69세대	
					51.99㎡	24세대	

정비계획결정도 및 기타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09-529호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완화에 따른 변경고시의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지정 및 특정구역 지정·표시완화 고시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1. 완화고시 이유

- 친환경적· 자원 효율적인 LED전자 현수막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서울의 중심인 우리중구의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

2. 주요내용

- 1)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로 지정: LED전자 현수막게시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물로 지정
- 2) 특정구역 지정
 - 가. 기존 현수막게시대 설치지역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광희빌딩 옆	광희동1가 194-8	도로
2	장충체육관 화단 앞	장충동1가 200-100	도로
3	염천교 다리 옆	의주로2가 473-2	도로

나. 관광특구 지역(명동,동대문,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 내)

- 관내 관광특구 지역중 LED전자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

다. 구청장이 위의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설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한 장소

3. 표시완화 사항

1)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면적 완화

-LED전자 현수막 게시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상 전체면적을 활용하여 전자문자,동영상을 표출할 수 있다.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

-특정구역에 설치하는 LED전자 현수막 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빛이 점멸하거나 Full Color 로 표시할 수 있다

4. 설치시기

- 2009. 9. : 2개소 시범설치 및 운영
- 2009. 10. : 4개소 설치 및 운영

5. 부 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기타사항) 이 고시는 LED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운영을 위한 고시로서 이 밖의 LED전자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 자격요건, 규격, 제반사항 등은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09-245호 『LED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위탁운영사 모집공고』 기준에 따름

6. 의견제출

이 고시안의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909, FAX : 2260-1176, kjs257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고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2260-190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제출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완화 주민 의견 청취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	--	--	--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09-530호

서울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서울중앙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신청인으로부터 동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이 접수되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 열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 나. 공람장소 : 중구청 지역경제과(☎ 2260-1786)
- 다. 공람내용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 1) 사업명칭 :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
 - 2) 사업신청자 : (주)티피오씨글로벌 대표이사 백 유 흥
 - 3)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 흥인동 14번지 일대, 황학동 371번지 일대
황학동 732번지 일대, 황학동 753번지 일대 , 황학동 754번지
 - 4) 시장정비구역의 면적 : 24,423㎡
 -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6) 건축규모(계획) : 지하5층, 지상60·63·70층 주상복합건물 3개동
 - 7) 기 타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관계도서 지역경제과에 비치
 - 다수인의 연명부가 첨부된 의견 제출 시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인사발령

■ 일반직 공무원 복직

2009. 8. 1.

連番	姓 名	發 令 內 容	現 職	
			所 屬	職 級
1	이육현	복직을 명함	민 원 봉 사 과	지 방 행 정 사 보